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9 선고 2019가합549789 판결 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

담당변호사 이상국

피 고 B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

담당변호사 김동진, 홍수희, 이문호

변 론 종 결 2020. 5. 22.

판 결 선 고 2020. 6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임야 661㎡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. 5. 8. 접수 제18768호의 ‘D’를 대표자로 추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8. 5. 8. 접수 제18769호로 ‘A사’의 명칭을 ‘B사’로 변경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문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는 E의 소유였다가, 1977. 12. 19.에 1977. 12. 10. 증여를 원인으로 한 ‘B사(B寺)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F(법명 G, 1995년 11월경 사망하였다)은 1981년경 E의 아들인 H에게 약 850만 원을 지급하고,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‘B사’라는 명칭으로 사찰을 운영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사찰’이라 한다).

다. 그 후 F과 그 가족들인 I, J, K, L, M는 1983. 2. 5.경 이 사건 사찰의 명칭을 ‘N사(N寺)’로 정하고,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부대시설을 기본재산으로 하며,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 후,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임원(원칙적으로 주지를 겸직하되,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주지를 분리 선임할 수 있다)이 이 사건 사찰을 대표한다(주지가 대표임원과 분리 선임된 경우 주지는 대표임원의 명에 따른다)는 내용의 이 사건 사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들 6인으로 이 사건 사찰의 이사회를 구성하였다.

라. 그 후 F은 1983. 9. 14.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칭을 ‘B사’에서 ‘N사’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,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신청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한편 F은 1989년경 이 사건 사찰을 총본산으로 하여 ‘O(2009. 4. 17. ’사단법인 P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. 이하 ‘O’이라 한다)을 창종하였고, 1989. 9. 9.경 이 사건 사찰을 O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.

바. F, I, J, K, L, M는 1993. 11. 1.경 이 사건 사찰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찰의 명칭을

원고{A사(A寺)}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.

사. J(F의 아들이다)는 1994. 3. 14.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임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'N사'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명칭을 'N사'에서 '원고(A사)'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.

아. 이 사건 사찰을 포함하여 서울 종로구 Q 소재 대웅전, R 소재 관음전, S 소재 보광전, T 소재 극락전은 그 운영주체 및 소유자가 상이한 별개의 개인사찰인데, 1988. 5. 29. 위 5개의 사찰을 합하여 'U사(U寺)'라는 명칭으로 당시 시행되던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(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, 위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)로 지정되었고, 1988. 7. 25. 종로구청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(이하 '전통사찰 U사'라 한다). 그리고 D는 2009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전통사찰 U사의 주지로 등록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,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고 J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1981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, F이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면서 O 등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찰을 그 소속 사찰로 등록하기도 하였고, 이 사건 사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였으며,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명의를 이 사건 사찰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권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.

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J가 'N사' 및 원고의 대표임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, ② 서울 종로구청장이 1994. 3. 2. 발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에 의하면, 'N사'는 그 주소가 종로구 C이고, J가 대표자로 기재된 점, ③ O에서 J에게 원고의 대표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, J를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.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7. 12. 19.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자 명칭인 'B사'가 '전통사찰 U사'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명칭을 'B사'에서 'N사'로, 다시 'N사'에서 '원고(A사)'로 각각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
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의 대표자로 'D'를 추가하고 소유자 명칭을 '원고(A사)'에서 'B사'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들이 각각 마쳐짐으로써, 마치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전통사찰 U사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유인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상주, 판사 김원목, 판사 박미선